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등의 사회진출을 지원하고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법령상 외국인투자 연구개발시설의 기준에 포함되어 있는 연구경력을 산정할 때에 학사학위 취득 전의 연구경력도 학사학위 취득 후의 연구경력과 동등하게 인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법령별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 8. 0. ~ 9. 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중 “연구경력”을 “연구경력(학사학위 취득 전의 연구경력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6조(연구개발시설의 기준) ① 영 제2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연구개발시설이란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을 말한다.	제16조(연구개발시설의 기준) ① ----- ----- ----- ----- ----.
1.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3년 이상의 <u>연구경력</u> 또는 석사학위 이상 소지한 연구전담인력이 5명 이상일 것	1. ----- -- <u>연구경력(학사학위 취득 전의 연구경력을 포함한다)</u> - -----
2. · 3. (생략)	2. · 3.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등의 사회진출을 지원하고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법령상 타이어 소음도를 스스로 측정하는 사람의 인력기준에 포함되어 있는 실무경력을 산정할 때에 학위 또는 자격증 취득 전과 학교를 졸업하기 전의 실무경력도 학위 또는 자격증 취득 후와 학교를 졸업한 후의 실무경력과 동등하게 인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타 : 1) 법령별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 8. 0. ~ 9. 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4의3 제2호에 비고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비고: 가목1)나)·다), 같은 목 2)나)·다) 및 나목1)에 따른 해당 분야의 실무에 종사한 경력과 가목3)가)·나) 및 나목2)에 따른 관련 분야의 실무에 종사한 경력에는 각 목의 학위·자격 또는 학교(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취득·졸업하기 전의 경력과 취득·졸업한 후의 경력이 모두 포함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등의 사회진출을 지원하고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빚공해 검사기관의 지정을 위한 기술인력 요건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을 명확하게 하고, 실무경력을 산정할 때에 학위 취득 전의 실무경력도 학위 취득 후의 실무경력과 동등하게 인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법령별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 8. 0. ~ 9. 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나목1)부터 4)까지 중 “해당 분야”를 각각 “빛공해 관련 분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의 비고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빛공해 관련 분야”란 환경공학, 건축학, 건축공학, 기계공학, 물리학, 전기공학, 전자공학, 안경광학 등 빛공해와 빛환경에 관련된 분야를 말한다.
2. 가목2)·3)에 따른 해당 분야 및 나목1)부터 4)까지에 따른 빛공해 관련 분야의 실무에 종사한 경력에는 각 목의 해당 학위 취득 전의 경력과 해당 학위 취득 후의 경력이 모두 포함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